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96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김용만 · 전현희 · 김승원
이인영 · 문진석 · 강준현
조승래 · 박상혁 · 김우영
김영배 · 한준호 · 최혁진
송옥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조정 권고나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시정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및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재심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상 제외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권 존중과 역사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법적인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체계를 역사적 정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8제1항제8호, 제74조의10제3호 및 제79조제1항제6호 신설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5제1항제13호 중 “제79조제1항제5호”를 “제7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제74조의10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가 있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로 한다.

6. 위법적인 폭력·학살·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의 가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되,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u>제79조제1항제5호</u>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3. <u>제7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u> ----- ----- ----- -----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① ----- ----- ----- ----- ----- ----- ----- ----- -----.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②·③ (생략)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

1. ~ 7. (현행과 같음)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위원장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의10(재심의 요구) -----

-----.

1.·2. (현행과 같음)

3.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
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
의 처분에 대하여 「진실·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권
고가 있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의 배제) ① -----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신 설>

② (생략)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뒤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llegible]

1. ~ 5. (현행과 같음)

6. 위법적인 폭력 · 학살 · 의문
사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
의 가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로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